제 1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도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02월0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오**	오** 1963-03-09	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	재등록
장**	장** 1965-09-03	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	재등록
정**	정** 1970-07-20	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어류포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정지영 문의전화 : 061-540-6822)

2018년 01월 25일

조도면장 인